

2025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(안)

의안번호	2619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11. 13.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” 는 규정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대상 : (재)금천문화재단

나. 출연 필요성

- 1) 금천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·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금천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지원
- 2) 구에서 위탁하는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
- 3)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, 지역축제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기여
 - ▶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 후, 2025 회계연도 사업예산(안) 심의·의결

다. 2025년 예산액

- 1) 문화재단 총 예산액 : 금10,466,583천원
- 2) 출연금 요구액 : 금9,336,325천원

3. 참고사항

가. 과목별 편성내역, 지출예산총괄(부서별)

나. 관계법령

- 1)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2)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지원)
- 3)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(운영재원)

<붙임1>

수입 예산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과 목	2025년(안)	2024년	증감	증감률
총계	10,466,583	8,465,586	2,000,997	24%
사업예산	10,084,848	8,135,069	1,949,779	24%
영업수익	10,072,848	8,123,069	1,949,779	24%
출연금수입	9,336,325	7,493,803	1,842,522	25%
관리사업수입	50,000	50,000	0	0%
보조금수입	586,523	479,266	107,257	22%
기부금수입	100,000	100,000	0	0%
영업외수익	12,000	12,000	0	0%
자본예산	381,735	330,517	51,218	15%
유보자금	381,735	330,517	51,218	15%
순세계잉여금	381,735	330,517	51,218	15%

- 축제기획팀 신설 및 구 예산 이관에 따른 출연금 증액
- 관리사업수입
 - 금나래아트홀 공연 관람료 및 대관 수입
 - 구립도서관 임대 수입 등
- 예산총계주의에 의거하여 2025년에 보조금수입과 기부금 수입 반영
(회계연도 중 보조금 및 기부금 사업비가 예산을 초과하거나 감소할 경우,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)
- 2024년 순세계잉여금 381,735천원 수입예산 반영

<붙임2>

(단위:천원)

구분	단위	세부	2025년(안)	2024년	전년(증△감)	증감률
총계			10,466,583	8,465,586	2,000,997	24%
1. 재단자체사업			9,780,060	7,886,320	1,893,740	24%
재단운영(경영기획팀)			5,756,066	5,116,261	639,805	13%
		인건비	4,284,520	3,802,916	481,604	13%
		퇴직급여충당금	290,855	289,508	1,347	0%
		일반운영비	1,119,991	1,008,837	111,154	11%
		재단 홍보마케팅 강화	60,700	15,000	45,700	305%
지역문화진흥사업(지역문화팀)			352,700	292,721	59,979	20%
		지역문화사업운영경비	11,265	20,581	△9,316	△45%
		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	100,000	82,502	17,498	21%
		민천명월예술인가	82,000	78,018	3,982	5%
		금천우리동네오케스트라	63,000	55,000	8,000	15%
		문화예술로돌봄	22,535	20,000	2,535	13%
		지역작가시각예술지원사업	23,400	16,620	6,780	41%
		지역간 연계협력인양환영소화	20,900	20,000	900	5%
		지역문화예술정책 개발	29,600	0	29,600	순증
예술진흥사업(예술기획팀)			935,703	840,376	95,327	11%
		예술진흥 운영경비	76,107	54,223	21,884	40%
		금나래아트홀 시설운영	78,896	103,556	△24,660	△24%
		금나래아트홀 공연전시 (기획공연 시리즈, 특별기획공연, 문화예술콘서트, 기획전시, 홍보·마케팅 운영)	460,700	461,597	△897	△0%
		금천예술활성화사업 (금천아트비즈니스, 시 음악 콘서트, 가산디지털테라스, 금천라이브)	320,000	221,000	99,000	45%
축제문화진흥사업(축제기획팀)			1,081,763	130,000	951,763	732%
		축제문화사업운영경비	8,263	0	8,263	순증
		금천하모너축제	456,400	50,000	406,400	813%
		제 5회 금천매선영화제	96,700	80,000	16,700	21%
		금천 CC페스타 브랜드 축제 육성	66,000	0	66,000	순증
		정초희망 능행차 공동제천 축제	204,400	0	204,400	순증
		(가칭)금천시 흥행공문화제	250,000	0	250,000	순증
독서문화진흥사업(도서관기획팀)			1,000,358	903,092	97,266	11%
		독서문화 운영경비	639,971	583,159	56,812	10%
		개관연장사업비	70,800	72,549	△1,749	△2%
		북페스티벌	35,000	35,000	0	0%
		도서관 개칭 30주년 기념 사업	10,000	0	10,000	순증
		작은도서관	213,821	182,503	31,318	17%
		스마트도서관	30,766	29,881	885	3%

구분	단위	세부	2025년(안)	2024년	전년(증△감)	증감률
총계			10,466,583	8,465,586	2,000,997	24%
독서문화진흥사업(독산도서관)			222,863	214,908	7,955	4%
		독산도서관 시설운영	181,363	176,908	4,455	3%
		독산 문화 프로그램	20,000	20,000	0	-
		독산 한 책 독후감 공모전	5,000	5,000	0	-
		독산 특화사업	10,000	10,000	0	-
		독산 북스타트사업	3,000	3,000	0	-
		독산 시대적 이슈 사업	3,500	0	3,500	순증
독서문화진흥사업(가산도서관)			162,664	132,996	29,668	22%
		가산도서관 시설운영	123,164	96,996	26,168	27%
		가산 문화 프로그램	20,000	20,000	0	-
		가산 특화사업	10,000	10,000	0	-
		가산 북스타트사업	3,000	3,000	0	-
		가산 헬로우코딩 사업	3,000	3,000	0	-
		가산 시대적 이슈 사업	3,500	0	3,500	순증
독서문화진흥사업(금나래도서관)			91,080	85,790	5,290	6%
		금나래도서관 시설운영	44,580	42,790	1,790	4%
		금나래 문화 프로그램	20,000	20,000	0	-
		금나래 특화사업	10,000	10,000	0	-
		나래랑 책이랑	10,000	10,000	0	-
		금나래 북스타트	3,000	3,000	0	-
		금나래 시대적 이슈 사업	3,500	0	3,500	순증
독서문화진흥사업(시흥도서관)			176,863	170,176	6,687	4%
		시흥도서관 시설운영	118,763	115,576	3,187	3%
		시흥 문화 프로그램	20,000	20,000	0	-
		꿈꿈 프로젝트	21,600	21,600	0	-
		시흥 특화사업	10,000	10,000	0	-
		시흥 북스타트	3,000	3,000	0	-
		시흥 시대적 이슈 사업	3,500	0	3,500	순증
2.보조금 및 기부금 사업비			686,523	579,266	107,257	19%
	보조금사업		586,523	479,266	107,257	22%
		보조금사업	586,523	479,266	107,257	22%
	기부금사업		100,000	100,000	0	-
		기부금 사업	100,000	100,000	0	-

관계법령

【지방재정법】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【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】

제20조(재정지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(해산)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【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】

제12조(운영재원)

-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, 재단 사업 수익금,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